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2897

제출년월일 : 2021년 10월 15일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같은 법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개정('21.7.13. 시행)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공시설등 설치비용 제공이 법제화되었고, 제공된 비용의 사용 범위가서울시 전체로 광역화되었음.
- 나. 이에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, 서울시 주택정책 지원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법 제52조의2의 신설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부채납 가능시설을 확대함(안 제19조).
- 나. 법 제52조의2제5항 신설 및 영 제42조의3제2항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삭제 등에 따라 조례 위임규정을 개정함(안 제19조의3).
 - 1) 법 제52조의2제5항의 조례 위임사항인 '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'을 규정함(안 제19조의3제1항).
 - 2)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'감정평가를 통한 토지가액의 차이의 범위 내 납부액 산정기준'을 규정함(안 제19조의3제2항).
 - 3) 영 제46조의2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'비용 납부액 납부방법'을 규정함 (안 제19조의3제3항).

다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위한 민간임대 의무기간(8년 → 10년)을 조정함(안 제55조제14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
 - 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 - 2) 입법예고('21. 8. 5.~8. 25.)결과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영 제42조의3제2항제12호다목"을 "법제52조의2제1항제3호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오피스텔(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2조의2,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제4 조제2호의 오피스텔을 말한다)

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19조의3(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) ①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 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등 의 설치 제공 또는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(이하 "공공기여"라 한다)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한다.
 - 2. 제1호에 따른 사전협의 및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 - ②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 관리계획의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이내에서 결정하며, 공공시 설등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은 제19조의2를 적용한다.
 - ③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비용 납부액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

같다.

- 1.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- 2. 사업시행자는 건축허가 등 이전에 현금납부액,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시장 및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55조제14항제2호 중 "8년"을 "10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혅

등) ① (생략)

② 영 제42조의3제2항제12호다 목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 설을 말한다. 다만, 해당 지구단 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 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. ~ 4. (생 략) <신 설>

제19조의3(대규모 시설이전지 등 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) ① 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, 제14 호에 따른 관할 시·군·구 내 공 공시설등이 취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.

- 1.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, 보호 지구, 취락지구, 개발진흥지구 또는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구 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
- 2. 지구단위계획구역, 도시 및

정 안 개

제19조(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제19조(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 오피스텔(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의2,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, 제4조제2호의 오피스 텔을 말한다)

제19조의3(공공시설등의 설치비 용 납부 등)

- ①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사용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제공 또는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(이하 "공공기여"라 한다)

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

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 구역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

진지구

- 3.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중 공 공시설등이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
- ② 영 제42조의3제2항제14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 며, 그 기금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

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
- 2. 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사무 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
- 3.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 비 지출
- 4. 그 밖에 기금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
- ③ 영 제42조의3제2항제15호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내용, 공

개 정 안

- 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 에 한하여 협의된 내용을 바 탕으로 수립한다.
- 2. 제1호에 따른 사전협의 및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 ②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이내에서 결정하며, 공공시설등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은 제19조의2를 적용한다.
- ③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비용 납부액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착공 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 사 신청 전까지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- 2. 사업시행자는 건축허가 등이전에 현금납부액,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시장 및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공시설등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 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제공 또는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 등(이하 "공공기여"라 한 다.)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 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할 것.
- 2. 공공기여의 내용은 감정평가 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이내에서 결정한다.
- 3. 공공기여 내용 중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산정은 제19조 의2(공공시설 설치비용 및 부 지가액 산정방법)를 적용한다.
- 4. 제1호에 따른 사전협의 및 제 2호에 따른 공공기여 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55조(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) 제55조(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) ① ~ ③ (생 략)
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	(4)
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	
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「공	
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호가	
목,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	
법」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	
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	
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	
수 있는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	
같다. 다만, 임대주택건설 사업	
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하로	
용적률을 신청하는 경우 그에	
따른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임대의무기간이 <u>8년</u> 이상인	2 <u>10년</u>
경우 :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	
15퍼센트	
① (생략)	① ~ ②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 용 추계서 미첨 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<u>비용을 수반하는</u>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

4. 작성자

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전정훈(02-2133-8451)